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 | |
|--------|------|
| 선 람 | 기관의장 |
| | |

제1037호 2014. 7.28(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8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8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5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 - 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7.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이화로26번길 28외 9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 도 로 명 고 시 일 | 도 로 명 부 여 사유 |
|------|-------|-------------------|----------------|-----------------|
| | | 별 도 열 략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7. 2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07-25

| 연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1 | 인천 서구 경서동 1001-3 | 이화로26번길 28 | 2012-10-19 | 이화로 시작지점부터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2 | 인천 서구 경서동 976-109 | 옥빛로15번길 9 | 2013-07-30 | 옥빛로 시작지점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3 | 인천 서구 검암동 산77-2 | 서곶로 468-19 | 2009-08-28 |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 |
| 4 | 인천 서구 경서동 845-17 | 청라한울로41번길 13-1 | 2011-02-14 |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5 | 인천 서구 경서동 845-16 | 청라한울로41번길 13 | 2011-02-14 |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6 | 인천 서구 오류동 1614-1 | 보듬1로 47 | 2012-10-25 | 보듬로에서 첫번째 분기되는 도로 | |
| 7 | 인천 서구 원당동 847-5 | 고산로40번2길 5 | 2008-12-31 | 고산로 40번길에서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
| 8 | 인천 서구 오류동 1624-11 | 도담1로 9 | 2012-10-25 | 도담로에서 첫번째 분기되는 도로 | |
| 9 | 인천 서구 대곡동 324-4 | 도곡로 118 | 2013-07-30 | 도치울이라고 불리던 옛지명 활용 | |
| 10 | 인천 서구 불로동 306-10 | 고산후로 371-16 | 2008-12-31 | 고산후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 07.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
|---------------------|-----------|--------------|---------------|
| 인천 서구 연희동 687-18 | 대평로8번길 16 | 2014-07-14 | 건축물 멸실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8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7.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근무로 인한 타성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창조적인 공직분위기 조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2. 주요내용

가. 연가일수 산정 재직기간 (미)산입기간 구체적 규정(안 제18조제2항)

-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재직기간 미산입
단, 육아휴직(자녀 1명에 대하여 최초의 1년, 셋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

나. 공가 근거규정 개정(안 제22조제5호)

- 2012. 9.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제25조로 개정

다.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안 제23조제2항)

- 현행은 임신공무원에게 임신·출산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0일을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다태아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므로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여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에 기여

라.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 사용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 단서 신설)

- 현행은 90일의 출산휴가를 출산일 전·후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함.
-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에게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아 및 모성 보호에 기여

마.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9항 신설)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재직자의 공로 치하 및 활기 있고 창조성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 알맞게 정비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 8. 1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094 / Fax 032-560-2710 】

4.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포함한다)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다)제47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무시간외”를 “근무시간 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비상근무에 관하여”를 “비상근무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출장기일안”을 “출장기일 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전기간중”을 “과전기간 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무중”을 “근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휴대등”을 “휴대 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일 이상”을 “15일 이상”으로, “15일미”를 “15일 미”로,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을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으로, “0.5일미”를 “0.5일 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상외”를 “부상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을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필요한기간”을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신중”을 “임신 중”으로, “90일”을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를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한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4항 본문 중 “임신한경우”를 “임신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제25조의2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제3

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의 규정”을 “법 제57조”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당 기타”를 “정당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복무선서) ① <u>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u>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3조의2(비밀엄수) (신설 2010.12.17)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법령에 <u>의하여</u> 비밀로 지정된 사항</p> <p>2. ~ 4. (생략)</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u>근무시간외</u>에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p> | <p><u>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u> 제1조(목적) ----- ----- 포함한다)지방공무원----- ----- -----.</p> <p>제2조(복무선서) ① <u>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u> -- <u>한다</u>)제47조에 따라-----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비밀엄수) ----- ----- ----- ----- -----.</p> <p>1. ----- <u>따라</u>-----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u>근무시간 외</u>----- -----</p> |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생략)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생략)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비상근무에 -----
-----.

제8조(출장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출장기일
안-----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
-- 파견기간 중-----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복장등) ① ----- 근무
중 -----
-----.

② ----- 휴대
등-----
-----.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③ (생략)

④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생략)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현행과 같음)

④ -----

-----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26조의2에 따른-----

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
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
급하고 연가에 같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
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생략)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
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
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
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
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8조에 따른-----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15일 이상-----
----- 15일 미-----

-----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 0.
5일 미만은 절사한다. (현행과 같
음)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②·③ (생략)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

③ ----- 부상 외-----

-----.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

제21조(병가) ① -----
----- 각호의 어느 하나----- 범위 안-----

----- 제20조제3항에 따른-----
-----.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
----- 각호의 어느 하나-----
----- 필요한 기간 -----
-----.

1. ----- 그 밖의 ----- 따
른 -----

| | |
|--|---|
| 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 ----- |
|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 2. ----- -- <u>그 밖의</u> ----- |
| 3. <u>법률의 규정에 의하여</u> 투표에 참가할 때 | 3. <u>법률에 따라</u> ----- |
|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 5. ----- <u>제25조에 따른</u> ----- |
|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6. ----- ---- <u>제29조에 따른</u> ----- |
|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7. ----- <u>그 밖</u> ----- |
| 8. (생략) | 8. (현행과 같음) |
| 9.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9. 「 <u>혈액관리법 시행령</u> 」 제2조에 <u>따른</u> ----- |
| 10.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u>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u> 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하는 때 | 10. ----- <u>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교섭위원</u> ----- |
|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 제23조(특별휴가) ① ----- ----- <u>그 밖의</u> ----- ----- <u>따</u> |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휴직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삭 제

라 -----.

② 임신 중----- 9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한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삭 제

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④ ----- 임신한 경우-----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

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
----- 범위 내-----

-----.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인천광역시 서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 4. (생략)

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
 --- 각호의 어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

제27조(겸직허가) ① -----
 ---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 각 호-----.

1.·2. (현행과 같음)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에 따른-----

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 1. (생략)
-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 3. (생략)
-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각 호의 어
는 하나-----

- .
- 1. (현행과 같음)
- 2. ---- 그 밖의 -----

- 3. (현행과 같음)
- 4. 정당 그 밖의 -----

-----.

관 계 법 령 발 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대통령령)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 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⑦ (생략)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대통령령)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대통령령)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3항(대통령령)

제7조의3(특별휴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8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열람(회의록 공개)
-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공동위원회)를 거쳐야 함
-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2. 주요내용

- 제10조(회의록의 공개) 신설
- 제1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8.1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762, FAX 032-560-277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제114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및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서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④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시간 48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회의록의 공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 및 영 1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 시의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

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제113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 업무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제114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 <p>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제114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p> |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및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및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회의원, 공무원 및 토지이용·교통·환경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과 서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④ 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생략)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시간 48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서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④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현행 제4조와 같음)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시간 48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0조 · 제11조 (생략)

제12조(분과위원회) ①영제113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의 공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 및 영 1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 시의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 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영제113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

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
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
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생 략)

⑥ 이 조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운영에 관하여는 제
4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생 략)

<신 설>

제14조 (생 략)

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

④ -----
-----위원 중에서-----

⑤ (현행과 같음)

⑥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
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
의 운영 등은 제4조제1항, 제2
항, 제4항 및 제5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